강사료 지급 지침



[시행 2020, 3, 1] [서울대학교학교지침 제-호, 2020, 2, 14, 일부개정]

서울대학교 교무처 학사과 02-880-5043

- 1. 목적
- 1. 목적
- 이 지침은 「서울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 강사료 지급 대상 및 범위
- 가. 강사: 주담당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
- 나. 명예교수, 부설학교 교원: 주당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급
- 다. 전임교원: 연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초과한 경우, 다만, 대학원 논문연구는 포함하지 않음
- 라. 원격수업을 담당한 교원. 다만, 담당교원이 (가), (나), (다)에 해당할 경우에 한함
- 3. 강사료 지급 기준
- 가. 학기 중 강사료
 - 1) 계산방법: 강사료 산정 주수(4주 또는 3주) × 주담당시간수 × 강사료 지급기준액
 - 2) 강사료 산정주수

1학기

2학기

기간

강사료 산정주수

기간

강사료 산정주수

3월~5월

12주

9월~11월

12주

6월

3주

12월

-3주

계

15주

계

15주

- 3) 주담당시간수
- 가) 주담당시간수는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과과정 학점구조에서 정한 강의의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미술대학, 음악대학 및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실기지도를 제외한 실습강의의 실험·실습·실기 시간은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.
- 나) 공동강의의 경우 가)에 따라 산정된 주담당시간에서 강의 담당비율에 따라 산정한다.
- 4) 강사료 지급기준액

가) 기본지급단가

구분

단가(원)

전임 초과 강사료

30,000

강사료

강사, 부설학교 교원

80.000

명예교수

90,000

- 나) 강좌별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.
 - 수강인원이 81명 이상 150명 이하: 기본지급단가의 1.3배
 - 수강인원이 151명 이상: 기본지급단가의 1.5배
- 다) 국내외 저명인사의 강사료는 기본지급단가의 4배 이내를 지급한다. 다만,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저명인사로 인정할 만한 관련 자료와 〈별지 서식〉에 의해 강사료 지급 배율(4배 이내) 등을 정하여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5) 지급일: 학기 중 강사료는 강의를 진행한 월의 다음 월 5일에 지급하되, 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. 다만, 전임교원의 초과강사료는 연간 수업 주수를 기준으로 초과한 경우 12월 강사료 지급 시 지급한다.

나. 방학 중 강사료

1) 지급기준

방학 중 강사료는 학기 전·후 각 1주씩 총 2주(연간 4주)를 방학기간 중 강의계획 수립, 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하여 강사에게 지급한다.

- 2) 계산방법 (원/월)
- 가) 강의 시: 해당 정규학기 지급 강사료×1/16
- 나) 폐강 시: 해당 정규학기 계약 강사료×1/32
- 다) 단, 강사의 귀책사유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 방학 중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.
- 라) 해당 정규학기 강사료가 이 지침에 의해 지급되어야 할 총지급액보다 과소·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해 지급되어야 할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방학 중 강사료를 산정한다.
- 3) 지급방법: 해당 정규학기에 대한 방학 중 강사료 총지급액을 방학 중 1회 지급한다.
- 4) 지급일: 1학기 방학 중 강사료는 8월 5일, 2학기 방학 중 강사료는 다음 연도 2월 5일에 지급하며, 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.

다. 계절수업 강사료

계절수업을 담당한 경우「서울대학교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」및 「계절학기 운영 지침」에 따라 계절수업 강사료를 지급한다.

- 4. 기타사항
- 가. 시험시간은 규정 제2조의 보통강의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. 다만, 담당교수가 출석하여 감독하는 경우에 한하다.
- 나. 교내 행사(개교기념일 등) 또는 공휴일(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의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, 제3조의 대체공휴일)로 인하여 휴강한 경우 강사의 강사료는 담당 강의 시간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제14조 및 「서울대학교 학칙」제74조에 따른 학점당 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다. 총장은 대학(원)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밖에 강사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